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31
----------	--------

제안년월일 : 2024. 9. 3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 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2022.12.19.)

이에 지방의원 구급과 징계 시 월정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안 제6조)

나. 구급상태의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1항)

다.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함.
(안 제7조제2항)

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 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7조제3항)

마. 별표 제1호(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제2호(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으로, “및 여비를”을 “, 월정수당 및 여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u></p> <p><u>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u></p> <p>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u>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6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u></p> <p>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 -----<u>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u>----- -----, <u>월정수당 및 여비를</u>----- --<u><단서 삭제></u></p> <p><u>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u></u></p> <p><u>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u></p>

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 삭제 >

[별표 1] <개정 2017. 6. 8>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직급	종류	일부	일일	일일	일일	일일	일일	일일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일일
의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20,000	실내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원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승임구분표 중 1등급은 고속열차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승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승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 지급별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 삭제 >

[별표 2] (개정 2017.6.8)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철도승임	신박승임	항공 승임	자동차 승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외국·부의장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1등급액	1등급액	가등급 35	가등급 223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35	나등급 18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의원	2등급액	2등급액	2등급액	2등급액	가등급 30	가등급 176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30	나등급 137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106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81	라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교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비 대 상 사 유 서

1. 판단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여비지급기준)는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중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7조는 의원이 구금상태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어 해당 예산지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정팀 행정6급 최은영(02-3153-616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